

출발! 민주노조 1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설립 ABC



Korean Construction Enterprise Worker's Union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목 차

- I. 노동조합 왜 필요할까요?
- II. 노동조합,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 1. 출발 노동조합
 - 2. 하나 하나 준비하기
 - 3. 설립총회 진행하기
 - 4. 노동조합 설립 신고하기
 - 5. 노동조합 설립 직후 활동
 - 6. 조합원 조직화 활동
 - 7. 건설기업노동조합 지부 활동사례
- III. 양식 및 필요자료 모음
 - 건설기업노조 가입신청서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 건설기업조 모범규정
 -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 서명부 (예)
 - 투표용지(예)
 - 노동조합 가입원서(예)

I 노동조합 왜 필요할까요?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조법상의 노동조합에 대한 정의)

1. 노동법이라도 제대로 지키게 하려면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의 부재, 사용자의 노동법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노동법 위반율은 대단히 높습니다. 2015년 민주노총이 전국 여덟 개 산업단지 노동자 1천 437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평균 90%를 상회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위법 사실을 알더라도, 노동자가 이에 대응하기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를 내어 진정, 고소, 소송 등 법률적 대응 방법을 취해 보더라도 법적 전문성의 부족으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사용자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면 사업장 내에서 '모난 돌'로 찍히기 십상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에게는 해고 등 각종 보복 행위가 뒤따르게 되며, 이를 지켜본 동료 노동자들은 몸을 사리게 됩니다.

선언적 의미가 아닌 현실적 의미에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니고서는 사용자에게 노동법 준수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같은 법률 대응이더라도 개인 차원이 아니라 노동조합 차원에서 제기할 때 노동자로서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2. 노동법 이상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도 노동조합은 필요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노동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는 것은 2022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0명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요구하기 위해 2022년까지 기다려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법정 노동시간은 왜 하필 1주 '40시간'인가? 역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법정 노동시간이 1주 35시간인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법적 기준은 노사간 힘 대결의 균형점에서 형성되는 자의적 기준일 뿐입니다.

본래 노동조합의 존재 목적 자체가 법상 권리를 넘어 인간다운 노동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투쟁하면 법 이상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고 불합리한 법·제도도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II 노동조합,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출발! 노동조합



※ 상급단체 방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나하나 준비하기

1. 초동주체(준비모임) 구성

■ 초동주체 구성 :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결성에 함께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규합합니다.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3~5인 정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각자 역할을 분담해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꼭 가져야 할 필요는 없지만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습니다.

2. 실무적 준비

■ 노동조합 규약(규정) 초안 준비¹⁾

- 규약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조직 가입대상, 기관과 회의, 임원의 종류, 조합비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초동주체 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초안을 결정합니다.

★잠깐!

규약(규정)을 결정할 때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규약(규정)상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실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경우 행정관청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상급단체나 노무사, 노동상담센터 등의 자문을 받도록 합니다.

■ 사전에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 노동조합의 집행부(임원)은 설립총회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합니다. 하지만 힘있고 책임있는 집행부 구성을 위해 초동주체 내에서 사전에 집행부(임원) 구성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깐!

사전에 집행부(임원)구성에 대한 구성안이 초동주체 간 합의되거나 교감되지 못해 노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합의로 이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1) 만일 상급단체 가입을 결정했다면 규약이 아닌 규정이라고 합니다. 상급단체 가입 여부에 따라 명칭은 달라지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 창립선언문 작성

- 최소한 해당 사업장 임직원들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의 공통된 문제 의식들을 담아내고, 현재 회사(사측)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비판하고 노동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 하겠다는 의지를 구체적인 활동 계획으로 풀어내 작성합니다.

★잠깐!

노동조합 설립목적 명확히 / 향후 조합원 가입유도를 고려 / 회사에 대한 선전포고를 담아 작성합니다.

■ 사전에 단체협약 / 단체교섭요구(안)을 마련합니다.

- 노동조합 결성 후 바로 단체협약 등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 미리 단체협약(안)과 단체교섭요구(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마련하면 노동조합 결성 이후 단체교섭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될 뿐만아 니라 향후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기 수월합니다.
- 물론 설립총회 이후로 단체협약(안)을 미룰 수도 있지만 사전에 계획된 대략적인 내용이 필요합니다.

★잠깐!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핵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사(사측)에 요구할 단체교섭 요구(안)은 노동조합 결성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가 잘 되어 있다면 노동조합 결성 이후 바로 회사(사측)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급단체와 협업 및 지원요청

- 노동조합 결성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 부족으로 소홀하거나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상급단체입니다. 민주노총, 건설기업노동조합은 많은 노동조합의 결성과정에 법적, 제도적 부분은 물론 실무적인 부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깐!

상급조직 건설기업노동조합은 건설사 사무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입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은 민주노총과 건설산업연맹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이러한 상급단체에서는 소속된 다른 노조의 결성사례, 규약(규정), 단체협약 등의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혹시 모를 회사(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설립총회2) 진행하기

■ 설립총회 참가인원

- 참가인원의 하한선이나 제한은 없다. 하지만 가능하면 노동조합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향후 조합원 가입 활동 진행을 참작해 조직화합니다.

■ 설립총회의 시기

- 설립총회는 사전 준비정도를 고려하고 현재의 정세를 반영해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 설립총회의 절차

- ‘설립총회 회순’을 총회장에 게시하거나 회의자료에 포함합니다. 회순은 아래의 예를 참조합니다.

○○노동조합 설립총회

- 회 순 -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경과보고
- 임시의장 선출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정
- 성원보고
- 회순통과
- 안건토의
 1. 규약제정
 2. 임원선출
 3.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 기타토의
- 폐회선언

2) 설립총회는 사전 준비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깐!

- 설립총회는 자연스럽게 진행하면됩니다.
- 지부규정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해야 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은 반드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해야 한다.
- 지부규정 제정의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2항 단서) 규약의 제정은 재적 조합원 (당일 총회 참석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기업별 단위노조의 경우 설립총회에 참가한 조합원 수가 재적 조합원 수가 된다.

■ 총회 전 준비하세요

① 규약, 규정(안) 복사본	참석인원 수만큼 준비
② 회순	큰 종이에 회의 진행순서를 적어 회의장 앞에 붙이거나 참석자들에게 회의 자료와 함께 배포
③ 현수막 등	설립총회 명, 장소, 날짜 등이 표시된 현수막. 꼭 인쇄한 현수막일 필요는 없음. 각 조직의 여건에 맞게 제작, 게시.
④ 투표용지 및 투표함	규약제정, 임원선출 시 사용할 투표용지. 투표함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상자를 사용.
⑤ 노동조합 가입원서	
⑥ 설립총회 참석자 서명부	

■ 회의록 작성 및 교육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필수구비 서류가 아니지만 설립총회 회의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회의록과 사진 등의 자료로 설립근거 정당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 교육의 경우 설립총회 시작전이나 마무리 후 진행합니다. 다만 설립시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도 무방합니다.



노동조합 설립 신고하기

1. 기업별 노조일 경우

■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필요한 서류

- ① 노동조합설립신고서 1부. (양식 별첨)
- ② 규약 1부.
- ③ 설립총회 회의록 1부. (필수서류는 아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설립신고서 접수처 : 관할 행정관청(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① 항】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수, 임원의 성명과 주소,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처리기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교부(또는 보완명령, 반려)로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

■ 설립신고증 교부와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4항) 노동조합의 설립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라는 점에서 신고증이 교부된 날부터가 아니라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접수한 날부터 노동조합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 보완명령

-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면 설립신고증이 발급되는 조치입니다.

① 보완사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 규약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제정하지 않은 경우 - 임원을 조합원 중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지 않은 경우
② 보완기간	보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③ 처리	- 보완서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 교부. 20일 이내에 보완되지 않은 경우는 설립신고서 반려처분

■ 반려처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3항

- 노동조합의 자주성, 목적 등 본질적인 내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 행정관청은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합니다.

- 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②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③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④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⑥ 행정관청이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2. 건설기업노동조합 지부로 노동조합을 결성 할 경우

- 지부가입신청서, 창립총회회의록, 지부운영규정 각1부를 건설기업노조에 제출 후에 매달 열리는 중앙위원회(가맹조직 단위대표자회의)의결을 통해 지부가입 승인 후 지부인준필증을 발급합니다.
- 지부의 상황에 따라 가입승인이 급하게 필요할시 노조 위원장이 지부가입승인 가능합니다.
- 매월 말일 이전에 건설기업노조 법인 통장으로 의무금(조합비) 납부합니다.
- 2023년 조합비는 조합원 1인당 6,300원(매년 2월에 열리는 건설기업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의무금(조합비)을 결정합니다.

★잠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건설기업노조에 가입할 경우 따로 관할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건설기업노조에 지부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노동조합이 결성됩니다. 건설기업노동조합은 가입 승인 후 인준필증을 배부합니다.

[참고] 건설기업노조 규약 중 지부관련 내용

제 7 조 (조직대상) 조합은 상급단체 및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동하는 자로 건설기업노조의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가입이 승인된 건설 관련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설립한 지부 조합원과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건설 및 유관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2. 건설 및 유관기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제 10 조 (지부와 지회, 분회의 설치) 조합의 산하 조직은 지부로 하고 필요 시 지회 및 분회(이하 지부 등)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5 조 (조합비의 납부)

1. 조합원은 매월 말일까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를 납부한다.

제 63 조 (지부 등의 설치) 조합은 산하에 업무수행을 위한 자주적 조직으로서 지부, 지회와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역별 또는 사업장 별로 실정과 능력에 맞게 지부, 지회와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개별 가입자는 적절한 단위로 나누어 지부, 지회와 분회에 배정할 수 있다.

제 64 조 (지부 등의 의무) 각급 지부 등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1. 지부 등의 중요 업무는 조합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제 65 조 (지부 등 운영규정)

1.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 분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지부 등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갖는다. 단, 설립초기의 운영 규정은 단위노조 규약으로 같음하고 이후 조합의 내부적 검토를 통해 확정한다.

2. 지부 위원장의 선거 및 지부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에 준하여 적용한다.



노동조합(지부)의 설립 직후 활동3)

1) 노동조합[지부] 활동계획 수립

- 현재시점까지 지부설립과 관련된 진행경과를 바탕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
설립의 목적, 조합원 수, 조합원 결의상태, 조합원 가입활동, 회사의 상황, 홈페이지 구축.
- 설립총회 이전부터 논의했던 일정들에 대하여 재점검.
- 매월 28일 이전에 건설기업노조 법인 통장으로 의무금(조합비) 납부.(2020년 조합비는 조합원 1인당 6,300원)

2) 노동조합[지부] 설립기자회견

- 사업장 대내외적으로 지부가 설립된 바를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음.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조합원 조직화의 시작이며, 지부설립의 목적 / 활동방향 등을 제대로 담아내어 직원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자리가 되어야 함.
- 지부간부, 조합원 및 건설기업노조 임원을 비롯하여 타 지부 간부들도 적극 결합.
- 다만, 회사가 이미 지부설립을 인지했더라도 기자회견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지부활동을 약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을 상정하고 준비해야 함.

3) 노동조합[지부] 조합원가입 집중 캠페인

- 출근, 점심시간, 퇴근시간 등 업무시간 외 선전 활동(피켓, 현수막) 등을 일정 기간 지속 진행.
제작된 홈페이지를 공개하여 온라인 홍보작업과 기존 조합원들의 1:1 작업에 집중
- 단체교섭요구 이전에 최대한 조합원의 조직화를 위해 전력투구, 이후 교섭력의 관건.
- 현실적으로 본사 조합원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하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함.

4) 노동조합[지부] 설립통보 및 단체교섭요구

- 회사에 지부설립 통보 및 단체교섭 요청 공문 발송.
설립총회 이후 조합원 가입규모, 조합원 결의, 회사의 예상반응, 조합원 결의수준, 단체협약요구안 마련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섭 요구시기 결정.
- 단체교섭 요청할 때에는 노동조합명칭, 대표자명, 조합원수 등을 명시.
- 단체협약안은 작성 후에 적절한 시기에 사측에 전달



조합원 조직화 활동

1)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하는 동기부여

- 노동조합은 왜 필요한가? 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만 할까?
결국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이 동료 직원들에게 공감할 수 있어야만 함.
- 고용안정, 임금인상, 복지향상, 직장내 괴롭힘, 취업규칙, 고과체계, 부당인사, 노사협의회 한계와 사업본부별 이슈, 본사와 현장, 등 개인적 불만사항.
- 설립과정에서부터 동료들의 불만사항, 고민들을 취합하여 노동조합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할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을 만들어야 함.

2) 노동조합의 가입이 쉽지 않는 이유

- 노동조합에 대해 잘 몰라서, 기존 조합원들과 직원들과의 괴리감, 노동조합 가입시 불이익 받을 것을 염려, 무임승차 등 이유는 다양.
- 회사가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정도로 어려워져 고용불안 및 임금 및 근로조건의 후퇴 예상되거나 불확실성이 클때를 제외하고 폭발적인 조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 지금까지의 생활한 환경에서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두려움은 누구나 있음.
- 회사의 회유와 압박등 방해공작.

3) 조직화 활동의 기본

- 활동 주체가 노동조합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 함, 그래야 자신감을 가질수 있음.
이는 관심과 교육, 기존 선배 활동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하여 키워나감.
- 비록 노동조합활동은 나를 비롯한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되기 위해 하는 것이지만, 설립초기에는 어쩔수 없이 기존 조합원들이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일정정도 내려놔야 함.

4) 조직화 활동의 고려사항

- 주택본부, 토목본부, 플랜트본부 각 본부별 중심이 될수 있는 조합원 확보가 관건.
특정 본부 중심으로 편중 시 타 본부 조직확대 어려움
- 본사는 통상적으로 조직화가 보다 어렵고 늦게 진행되며, 현장 조직화가 수월함.
- 이는 건설업 특성에 기인한 부분이며, 현장이 불만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본사에 비해서 회사 인사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직원들의 자유도가 높음.
- 조직화 정도의 진행에 따라 판단하여 회사와의 대립정도를 세워야 함.
- 과거 노동조합의 해산 이력, 그룹오너의 재판진행과정, 계열사의 합병.



건설기업노동조합 지부 활동 사례

■ ○○엔지니어링

- ◆ 2017년 2월 8일 건설기업노조 미팅(A, B)
 - ◆ 2017년 10월 17일 건설기업노조 미팅(C)
 - ◆ 2017년 11월 25일 지부 설립
 - ◆ 2017년 12월 13일 지부 설립기자회견
 - ◆ 2018년 1월 10일 단체교섭 요구
 - ◆ 2019년 4월 23일 2019년 임금협약 체결
 - ◆ 2020년 4월 24일 2020년 임금협약 체결
 - ◆ 2020년 6월 1일 조합사무실 및 근로시간면제자(2,000시간) 확보
 - ◆ 2022년 4월 28일 단체협약 체결
- 권고사직의 일상화와 고과체계 개선, 근로조건상승, 취업규칙개정, 노사협의회개선, 합병우려에 대한 대응, 그룹의 지배를 벗어나 독립경영을 목적으로 지부를 설립하고 즉각 단체교섭요구를 하고 현재까지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활동들을 지속하고 있음.
 - 최초의 지부 설립 의사가 있었던 A, B 인원들과의 수차례 미팅과정에서 지부설립의 시기를 당장은 유보하고 추후 진행되는 사항(합병진행 / 구조조정)들을 고려하여 지부설립을 늦추기로 하였으나, C 라는 새로운 지부 설립 의사가 있는 인원이 등장하여 지부 설립을 진행기로함.
 - 초기 조합원 수는 적었으나, 지부설립 이후 특정 직군을 중심으로 집단적으로 조합원이 늘어났으며 지부 임원을 중심으로 집행부의 역할을 맡아줄 인원을 1~2명씩 계속 늘리는 작업이 계속 진행됨.
 - 비상장 회사이지만 그룹계열사이며, 그룹 내 다른 대형건설사가 있어 대외적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며, 다행히 그룹에 편입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그룹문화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이 지부 활동을 진행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많았음.
 - 또한 지부 임원들이 회사를 상대함에 있어 거침이 없어 지부설립 초기부터 본사를 중심으로 한 실천적인 선전활동을 진행하고,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교섭 진행이 잘 안되어 결국 결렬에 이르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일간의 간부파업도 진행할 정도의 전투력을 보임.
 - 현재 지부 임원들이 지부 설립 이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설립목적을 잊지 않고, 단체협약체결이 되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의 임금 및 여가시간을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지부 활동을 지속하는 한 이 사업장의 지부는 상당기간 유지되고 확대가능성이 있음.
 - 지부 임원들의 단결과 지속적인 투쟁에 힘입어 2022년 4월 28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조합원 확대사업 진행 중.

Ⅲ 양식 및 필요자료 모음



III -1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가입 신청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지부 가입신청서 No. _____				
지부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주소	전화번호		
설립연월일				
위 지부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 등에 찬성하고, 규약 및 제 규정, 규칙 준수 및 노동자 단결과 노조 확대, 강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며 규약 제8조에 따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 첨부 : 지부 운영규정 1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위원장 귀하				

Ⅲ-2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27>

노동조합 ☒ 설립
☐ 설립신고사항 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명칭		노동조합의 형태		단위노조(기업, 지역, 전국), 연합단체, 단위노조의 산하조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조합원 수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 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사업장	소속부서 및 직책			
임원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직책	성명	주소		

<연합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인 노동조합 관련 사항>

명칭	조합원 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	
			성명	주소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재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대표자 성명	소 재 지	조합원수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작성 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 설립신고

년 월 일 본인 외 명은 에서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노동조합의 설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노동조합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설립	규약 1부	수수료 없음
	변경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회의록이나 규약 등의 서류 1부 2. 설립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증)	

비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Ⅲ-3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모범규정(규약)⁴⁾

규 정(안)

20 . . . 제정

민주노총/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지부

4) 건설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할 경우 규약이 아닌 규정임. 모범규정을 참조해 노동조합별로 규정(안) 마련.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지부의 명칭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노조’) _____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 2 조 [목적] 지부는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지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단결권의 보장
2. 근로조건을 유지·개선
3. 작업환경의 개선
4. 공동복지 후생사업
5.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
6. 기술 및 교육수준의 향상
7.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제 4 조 [주된 사무소] 지부의 사무소는 _____에 둔다.

제 5 조 [법인] 지부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6 조 [연합단체] 지부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그 규약 및 결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며 지시사항을 이행한다.

제 2 장 조 직

제 7 조 [구성] 지부는 _____에 근무하는 자 중 지부에 가입된 자로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제 8 조 [조합원 자격취득 및 탈퇴]

① 조합원의 자격은 지부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지부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하며 지부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가입원서 제출자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때

2. 제명

3. 사망

② 본 지부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부에 제출한다.

제 9 조 [지회 설치] 지부는 필요시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 조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지부의 모든 문제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지부가 관리하는 시설 또는 사업장을 이용할 권리
3. 지부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지부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단, 계속 2개월 이상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동조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11 조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부내 각급 기관의 결정과 지시 이행
2. 규정, 규칙 등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3. 규정 및 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조합비 납부
4. 기타 결의기구에서 공식 결의된 사항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2 조 [회의기구] 지부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제 1 절 총 회(대의원대회)

제 13 조 [총회 및 대의원대회]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로써 소속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대회를 둘 수 있다.

제 14 조 [총회(대의원대회)소집] ① 총회(대의원대회)는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와 임시총회(임시의대의원대회)로 구분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분기 중에 지부장이 소집한다.
- ③ 총회(대의원대회)는 지부장이 적어도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 ④ 총회(대의원대회)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

⑤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5 조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 임시총회(임시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 지부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16 조 [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총회(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정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지회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연합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사항
9.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정책 건의
11. 노조 파견 대의원 선출
1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7 조 [대의원 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제 18 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대의원 배정] 대의원은 조합원 ___명당 1명씩 선출한다.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20 조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지부장 및 부지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21 조 [기능] 운영위원은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지부 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4.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에 관한 사항
6. 각종 규칙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7. 부서부장의 인준에 관한 사항
8.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해체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상무집행 위원회

제 22 조 [구성과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할 때 지부장이 소집한다.

제 23 조 [기능]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의 수입사항 집행
2.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각종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준비에 관한 사항
5. 상벌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7. 노사협약에 관한 사항
8.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 24 조 [구성 및 소집] 지부는 필요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제 5 절 회 의

제 25 조 [성립과 의결] 지부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6 조 [진행] 지부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 유고시에는 부지부장이 이를 대행하되 부지부장이 수 명인 경우에는 부지부장 중에서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27 조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정의 제정 변경과 임원의 불신임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1. 규정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지부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4. 긴급 및 변안동의 성립에 관한 사항

제 5 장 임 원

제 28 조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명
2. 부지부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약간명

제 29 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
 - 가. 지부를 대표하고 지부업무의 일체를 통괄한다.
 - 나.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다. 각종 지부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라.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마. 부장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 바. 단체교섭 체결권을 갖는다.
 - 사.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아. 선거관리위원 및 단체교섭위원을 위촉한다.
 - 자. 규정 해석권을 갖는다.
2. 부지부장
 - 가.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 나.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국장
 - 가.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나. 지부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 다. 현금 및 재산을 관리한다.
 -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 마. 부서장의 임·면을 제청한다.
4. 회계감사
규약에 의거 회계감사를 하고 총회(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 30 조 [임원의 선출] ① 지부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자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를 선출한다. 단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제 31 조 [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 장 부서와 임무

제 32 조 [부서] 지부는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 | | |
|----------|-----------|
| 1. 총무부 | 2. 정책부 |
| 3. 교육부 | 4. 홍보부 |
| 5. 조사통계부 | 6. 조직부 |
| 7. 복지후생부 | 8. 여성부 |
| 9. 문화부 | 10. 산업안전부 |

제 33 조 [부서의 업무]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한다.

1. 총 무 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2. 정 책 부 : 노동조합 정책업무
3. 교 육 부 : 조합원 교육
4. 홍 보 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업무
5. 조사통계부 : 지부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사무 일체
6. 조 직 부 : 조합원 가입조직 규율 유지 노동쟁의 발생 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7.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사업
8. 여 성 부 : 여성조합원의 자질향상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문 화 부 : 조합원의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부 :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제 34 조 [부장의 인준]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제 35 조 [차장 및 사무직원] 각 부서의 차장 및 사무직원은 필요에 따라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 7 장 노동쟁의

제 36 조 [조정신청] ① 지부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② 조정신청을 한 경우 노조에 즉시 보고한다.

제 37 조 [쟁의행위 결의] ①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쟁의행위 결의는 결의된 후 즉시 노조에 보고한다.

제 38 조 [쟁의행위 결의 결과공개] 지부는 제37조에 의하여 쟁의행위 결의를 위한 투표 종료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 39 조 [쟁의행위 투표자 명부등의 보존 및 열람] 지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 하여금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0 조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노동쟁의 발생을 신고한때는 지부장은 즉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제 41 조 [단체교섭 권한] ① 지부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지부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② 단체교섭 권한은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 42 조 [요구안 심의 및 확정]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부안을 심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

제 43 조 [단체교섭위원구성] ①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이 위촉하여 총회(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② 단체교섭위원은 지부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제 44 조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교섭권과 체결권은 지부장에게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시에는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 45 조 [노사협의위원] ① 노사협의 위원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그리고 지부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② 지부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9 장 재 정

제 46 조 [재정] 지부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 및 기타 기부금,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제 47 조 [조합비]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는 매월 급여의 1%로 한다.

제 48 조 [의무금] 지부는 상급단체에 의무금을 납부한다.

제 49 조 [회계년도] 지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50 조 [결산] 결산은 회계년도 종료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1 조 [운영의 공개] 지부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 52 조 [회계규정] 지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제 53 조 [회계감사] 조합비 회계의 적정여부는 회계감사위원이 6개월 마다 1회씩 감사하여야 하며 회계감사 위원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고 지부장은 그 시정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 장 표창 및 징계

제 54 조 [표창] 지부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제 55 조 [징계] ①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1. 지부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지부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조작행위를 하였을 때
 4. 지부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때
 5. 의무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6. 노동조합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7. 지부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 ② 징계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56 조 [임원 불신임] 임원 불신임은 선출기관에서 행하며,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한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57 조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 58 조 [재심청구] ①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11 장 해 산

제 60 조 [해산] 지부는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결의한 경우

부 칙

제 1 조 [시행]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통상관례] 본 규정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Ⅲ-4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 서명부(예)

()지부(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 일 시 : 년 월 일() : ~ :
- 장 소 :
- 참석자 : 명 (명단첨부)

회 순

1. 개 회 선 언
2. 경 과 보 고
3. 임시의장 선출
4. 성 원 보 고
5. 회 순 통 과
6. 서기와 감표위원 선출
7. 안건 심의
 - 1) 노동조합 규약(안)심의 및 의결
 - 2) 임원선출
 -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8. 폐 회 선 언

민주노총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지부

1. 개회선언

사회자 : 노동조합 설립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노동조합 설립총회 사회를 맡은 ()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 경과보고

사회자 :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설립총회까지의 노동조합 설립경과를 노조설립준비위원장으로 고생해주신 ()동지가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준비위원장 ()이 노동조합 설립경과를 보고하다.)

3. 임시의장 선출

사회자 : 회의진행을 위해 임시의장을 정해야 합니다. 임시의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 그동안 노동조합결성을 위해 준비위원장으로 노력해오신 ()동지를 임시의장으로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동 : 예.
사회자 : 그러면 동지여러분의 큰 박수로 ()동지를 임시의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 회의를 진행하기 시작하다.)

4. 성원보고(참석인원보고)

임시의장 : ()노동조합 설립총회 성원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설립총회에 ()명이 참석하여 설립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순통과(회의 진행순서)

임시의장 : 회순은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우선 노동조합 규약(안)을 심의하여 규약을 제정한 후 규약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노동조합 설립 이후 어떠한 사업계획을 할 것인지와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하는 순서입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회순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통과시켜도 되겠습니까?
일동 : 예

6. 서기와 감표위원의 선출

임시의장 : 회의의 기록을 위해 서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그러면 ()동지를 서기로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투표의 진행을 위해 감표위원을 임명하고자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 임시의장이 추천하기를 제안합니다.
임시의장 :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감표위원으로 ()동지를 임명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7. 안건토의

안전1. 규약제정에 관한 건

임시의장 : 우리 ()노동조합 규약제정을 위해 우선 한국노총 표준규약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마련한 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규약(안) 내용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은 후 내용을 검토한 후 규약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규약(안)을 설명하고 총회 참석자 모두 배부된 규약(안)을 검토하다.)

임시의장 : 제출된 규약(안)에 대해 토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규약은 노동조합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자치규범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 규약안 내용 토론하다.)

() : 더 이상 수정안이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최종안에 대하여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재청이요.

임시의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직접, 비밀, 무기명방식으로 규약(안)에 대한 가부투표를 하겠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설립신고 과정에서 규약관련 미비점이 발생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완하도록 위임을 함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인원이 ()명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과반수투표와 3분의 2가 찬성이므로 ()명이 의결정족수가 되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되다.)

임시의장 : 참석인원 ()명 중 찬성 ()표, 반대 ()표로 ()노동조합의 규약이 적법하게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전2. 임원선출에 관한 건

임시의장 : 제정된 규약에 따라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십시오.

() : 먼저 위원장을 선출한 후 다른 조합 임원(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은 후보추천을 받은 후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동의하면 그에 대한 일괄 가부 투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동 : 재청이요.

임시의장 : ()동지의 동의에 모두 찬성하십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그러면 우선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십시오.

() : 임시의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동지를 추천합니다.

(재청이 있다.)

임시의장 : 더 이상 추천이 없습니까?

일동 : 예.

임시의장 :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선출의 의결정족수는 참석인원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므로 ()명 이상의 찬성입니다.

(후보의 정견발표를 들은 후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를 하다.)

임시의장 : 투표자 ()명 중 찬성 ()표, 반대 ()표로 ()이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법적으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 다른 임원선출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회계감사, 사무국장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 후보자부터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 (), () 동지를 추천합니다.

의장 : (), ()동지가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본인의 동의여부는 다른 임원 후보자를 추천받은 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어떨습니까?

일동 : 예

의장 : 다음은 사무국장 후보와 회계감사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 사무국장으로 () 동지를 추천합니다.

() : 회계감사 후보로 () 동지를 추천합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동지가 없습니까?

일동 : 예.

의장 : 그러면 추천받은 동지들의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추천 받은 동지들은 각각의 직책과 선출에 동의하십니까?

일동 : 예.

의장 : 그러면 규약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이에 대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의장 : 참석인원 ()명 중 찬성 ()표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 () 동지가 부위원장, () 동지가 회계감사, () 동지가 사무국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로 환영하다.)

안건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건

의장 :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총회나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다루기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동 : 동의합니다.

8. 폐회선언

의장 :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노동조합 설립총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장 : () (서명)

기 록 : () (서명)

()지부(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서명부

● 일 시 :

● 장 소 :

연번	성명	연락처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III-5 투표용지(예)

투표용지	
안건 : 규정 제정	
찬성	반대
() 노동조합 설립총회	

투표용지	
안건 : 임원선출5)	
찬성	반대
() 노동조합 설립총회	

5) 임원선출의 경우 위원장, 부위원장, 회계감사 투표용지를 각각 마련해야 합니다.

Ⅲ-6 노동조합 가입원서(예)

노동조합 가입원서

이름/사번		본부	
부서/현장명		개인메일 (회사 외부)	
주소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노동조합 규정 및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하는 바이며, 규정에 따른 조합비 일괄공제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 노동조합